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교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 년 8 월 4 일

청 원 인

성 명 : 임선우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임선우

(인) 외 8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명 : 임선우
건명	학교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8년 8월 4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김선우 외 8명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제17회 정기 회의 통합위원회 의원입니다. 제17회 정기 회의 & 청소년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교보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입니다.</p> <p>본 위원회는 2007년 12월 14일, 학교보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2019년 5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사례를 제외하면 학교보건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자체별 학교보건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학교보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합니다. 학교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학교보건 수준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평등한 복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러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합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이 학교보건법 (제17조의 2) 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제17조의 2 (학교보건특별위원회)</p> <p>① 제2조의 2에 따라 지역별 보건정책 공유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학교보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② 학교보건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p> <p>③ 학교보건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각 지역 교육감으로 한다.</p> <p>④ 학교보건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지역 학교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지금까지의 교육부의 보건 문제 해결방법은 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식은 평소 발생하는 보건 문제에 관해 예방 방법과 대책을 구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14일, 평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보건 위원회의 구성을 하도록 하는 법안의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된 학교보건 위원회 회의 개최 사례를 제외하면 한 번도 학교보건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 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학교보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자문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학교보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자체별 학교보건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여 학교보건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학교보건 수준을 균등하게 하여 평등한 보건복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에 본 법안을 제안합니다. 본 법안을 통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주요골자

현행 학교보건환경 신장에 관한 학교보건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17조의 2 (학교보건특별위원회)

- ① 제2조의 2에 따라 지역별 보건정책 공유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학교보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학교보건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③ 학교보건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각 지역 교육감으로 한다.
- ④ 학교보건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지역 학교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현행	신설
	제17조의 2 (학교보건 특별위원회) ① 제2조의 2에 따라 지역별 보건정책 공유와 시·도 ② 학교보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으로 ③ 학교보건 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각 지역 교육 단, 교육감이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할 시, 교육부 장관 ④ 학교보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지역 학 ⑤ 분기별로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3. 기대효과

위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보건정책 공유를 활성화하여 평등한 복지 정책을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도 학교보건 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감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각 지역을 더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이 기대됩니다. 긴급상황 시 교육감에게 자체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즉각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http://m.thesege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77329397543>

국회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청원인 성명 : 임선우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원인 전화번호 :